

人權保護를 最高의 價値로

- 경찰, 수사과정에 변호인 참여 등 다양한 방안 모색 -

경찰청이 최근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수사의 투명성과 대국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사기관 최초로 시행한 “피의자 신문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제도”를 보완하고 그 대상을 “피해자 등”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갖는 등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99년 경찰청이 수사기관 최초로 시행한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 제도에 이은 수사절차상 변호인 조력 기회 확대 방안을 연구하고 그간 “피의자”

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 조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원칙을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연세대 심희기 교수는 “인권 단체나 시민단체가 아닌 수사기관인 경찰청이 먼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이를 통해 경찰은 국민을 위한 경찰,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찰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관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외대 이호중 교수도 『피해자에 의한 사인소추를 전면 배제하고 형사소추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는 현행 기소 독점주의의 형사소송체계 아래에서 형사피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상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이와관련해 인권보호가 최고의 가치인 점을 인식하여 이번 5월부터 피의자·참고인·피해자사 수사과정 변호

인 참여 지점을 새롭게 마련하여 전국의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함은 물론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찰은 인권보호를 수사의 대원칙으로 정립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각계 인사로 구성된 ‘인권수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 경찰청에 시민인권 보호단을 운영하여 경찰업무 전반에 대한 빈틈없는 국민참여형 인권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모든 경찰관서에 ‘영장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제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형사활동 평가시 구속사건 비중을 대폭하향 조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구속 수사원칙을 실천함으로써 헌법상 무죄 추정원칙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전반적 제도정비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전문가형 수사체제를 구축하여 전문성과 과학성을 높여나감으로서 경찰수사의 수준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와 세계 일류수준의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됨으로서 이제 경찰 자질을 따져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게 된 것이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사법서비스의 수준은 한 나라의 신인도나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상응한 수사구조의 구축은 시급한 과제인데도 우리의 경우는 검사에게 수사상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검찰과 경찰이 상명하복관계로 되어 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민주적 구조로 되어 있다.

영국과 미국은 경찰이 수사의 주체이고, 검찰은 소추기관으로서 양기관이 서로 대등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웃나라 일본도 경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주도하고, 검찰은 보완적인 2차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으로서 양기관이 대등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

경찰수사권 문제는 이번 참여정부에 들어서만도 정책과제로 선정 되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을 수차례에 걸쳐 언급한 바 있으며, 이 인기 의원, 홍미영 의원의 이와 관련된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으나, 그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것이 분권과 자율, 견제와 균형으로 가는 시점에서 수사구조도 당연히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불편해소와 사법서비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길이다.

責任奉仕위한 搜查權 調整 시급

— 김 재 민 (경찰대학 교수, 법학박사)

경·검의 수사권조정문제가 아직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경찰은 현 수사현실에 부합하도록 검사뿐 아니라 경찰도 수사주체로 명시하여야 하고, 경·검간 상호협력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형사소송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검찰은 경찰이 사실상의 수사권을 가지고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으므로 법제정의 필요성은 없는 것이며, 설사 경찰을 수사주체로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 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 권한행사의 주체가 명확해야 하고, 권한발동의 근거와 한계 또한 분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현행법상 수사보조기관에 불과한 경찰은 수사활동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독자적 수사진행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수사상 결정들을 법률상 수사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검사의 지휘 없이 수행하고 있다.

수사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현행 수사구조현실이 이렇함에도 법률을 개정하지 않은 채, 경찰이 수사보조자로서 사실상의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현행 체제를 고수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아래 두 가지 이유로 결코 질 높은 수사서비스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첫째,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책임이 약화되는데 따른 피해를 계속 보게 될 것이다. 수사보조자라고 하는 사법경찰관의 법적 지위는 엄밀하게 의미하면 수사실행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질 수 없는 지위이다. 이로 인해 사법경찰관의 경우 이를 이용하여 그 부실수사의 책임을 유일한 수사주체인 검사에게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고, 검사는 검사대로 그 부실수사의 원인을 경찰에게 돌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국가 수사기관의 수사책임 상호점가와 최종적 책임의 실정현상은 국민의 권익구제와 권리보호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둘째, 경찰의 부실수사는 물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위법·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견제할 어떤 외부기구

나 장치도 없는 까닭에, 국민은 검찰권력의 남용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특히 검찰의 부실수사나 수사권 남용과 같은 것들이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데 더욱 큰 문제가 있다. 검사가 준사법관으로서 경찰의 인권침해행위 감시를 자처하고 있지만 영국이나 독일의 검사와는 달리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서 그들 자신이 오히려 인권침해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항상 있는 반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외부기구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수사권조정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이 수사주체가 된다는 것은 경찰이 국민에게 직접 수사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경·검간 적절한 수사권한의 분배를 통해 현실적으로 견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높아진 검찰의 수사권력을 낮추어



조으로써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국민에 대한 봉사권력으로 변화시킨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제 수사권이라는 것이 국민에게 두려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무서운 권력, 혹은 국민에게 위세를 가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개념으로부터 하루 빨리 탈피하여야 한다. 오늘날 수사개념은 사회정의의 확보하고, 범죄피해자의 억울함을 신속히 풀어주기 위하여 ‘과학적·종립적·객관적 자세로 과거 사실관계를 재현함으로써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형사법 위반 사실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기술’이라고 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러한 수사개념에 의하면 수사권조정이라 하는 것도 ‘과거사실 재현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조정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수사의 민주화와 앞으로 시행될 공판중심주의적 사법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국민 전체의 유익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경찰에게 주체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경·검간 상호협력관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신속히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법 개정에 관여하고 있는 각 기관 종사자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바이다.



구홍일 경우회장이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李宅淳 廳長 경우회 명예회장으로 추대

前·現職 지휘부 간담회 개최

구홍일 경우회장을 비롯한 경우회 회장단과 이택순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청 실국장 일행이 최근 오찬을 겸한 전현직 지휘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구홍일 경우회장은 이택순 경찰청장에게 재향경우회 명예회장 추대장을 전달하는 한편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이 청장이 15만 경찰관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선배 경우들에 대한 배려와

예우를 강조한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경우회 발전에 적극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택순 경찰청장도 『선배 경우님들의 한결같은 치안현안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우리 15만 경찰관들은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빛나는 전통을 바탕으로 믿음직한 경찰, 안전한 나라 라

는 목표를 향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면서 『선배 경우님들의 적극적인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오찬 간담회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가운데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한 선후배 경찰인들이 정담을 나누면서 경우회 및 경찰 발전을 위한 의견교환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國民이 원하는 搜查權 調整, 왜 망설임니까?

- 1962년 신설된 헌법 제12조 3항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경찰의 수사권 조정건의는 완전한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화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상호협력적인 檢·警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1. 日帝의 잔재인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일본경찰은 이미 57년전(1948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전근대적인 상명하복의 檢·警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갖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검찰은 존경을, 경찰은 더 큰 신뢰를 받고 있다. 우리도 성숙된 민주사회의 여건에 맞게 인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두고, 경찰과 검찰은 경쟁과 협력의 상호보완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2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시분권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지구상에 수사권 없는 경찰은 한국뿐이며 오늘날 전세계의 형사소송절차는 기소의 주체와 수사의 주체로 분리되어 경찰과 검찰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추세에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헌법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사권(개시·종결), 공소권, 형집행권 등을 독점한 막강한 검찰이 1차 수사기관화 하고 있으므로 檢·警간 수사권의 분배로 견제와 경쟁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국민의 권익과 인권은 크게 신장될 것으로 확신한다.

3 더 이상 자질문제, 인권보호라는 구실로 경찰수사권 현실화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 20년간 4년제 경찰대학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정예간부의 양성, 사법·행정고시 합격자 특채, 간부후보생 배출, 법학전공 수사요원 특채, 조사요원 간부화, 인권담당관 배치, 유급 자문변호사제 도입, 피해자 보호법 운영 등의 자질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었고 순경채용자의 75%가 대졸학력 이상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해방이후 60년간 주장되어 온 경찰수사권의 시기상조론은 이제 그 명분을 잃었다.

4 수사분권 요구는 기관 이기주의적 바깥릇 다름이 아닙니다

범죄사건(연간 160여만건)의 97%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법률상 수사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연간 사건관련자 150여만명이 경찰과 검찰에서 중복조사를 받음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국민의 불편해소와 사법서비스 편익증진을 위해 경찰의 독자수사권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